

전, 평시 직장방호계획 운영 내규

제정 2012. 08. 01

제2차 개정 2019. 04. 2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, 평시 적 또는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고 직장내에 침투하여 인
원살상 및 주요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방호하는데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직장내에 편성되어 있는 가용자원(예비군, 민방위, 경비 요원)으로 학
교 시설 및 인원을 보호한다.

제3조 (주요시설운동) ① 교직원중 민방위 및 경비요원 가용자원 전투편성 운용

- ② 종합상황실 본관2층 회의실 (가중지자체설치) 활용
- ③ 교내 방범용 CCTV 직장방호용으로 전환 활용
- ④ 구내식당(3), 한방병원, 기타편의시설 **직장방호용으로** 전환 활용

제4조 (방위협의회 구성 및 임무) ① “81.1.1 상지대학교 직장 예비군중대 창설 방위지
원본부 구성 ☞**예비군법** 제14조의 3, 시행령 제23조 관련 규정

- ② 방위협의회 구성은 총장, 부총장, 보직교수, 학군단장, 예비군 연대장으로 구성하며
의장은 총장이 된다.
- ③ 방위협의회 운영은 분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
발생시 의장 권한으로 소집한다.
- ④ 방위협의회 의결사항
 - 가. 평시 교육훈련시 지원사항(급식지원, 차량지원, 기타지원 사항)
 - 나. **직장방호물자**, 장비구입, 기타 지원사항 발생시
 - 다. 불시동원 예비군, 민방위대원 소집(급식 및 기타 지원사항)
 - 라. 직장방호에 필요한 사항 전투근무지원 및 기타 제반 사항

부칙

1. 전, 평시 직장시설방호 내규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상기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사항을 준용한다.
 - ① 향방동원 9-4 향방동원 대상자 운용 지침
 - ② 향방동원 9-11 통신지원 지침
 - ③ 향방동원 9-12 전투근무지원 지침
 - ④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장 직장통합방위 협의회 운용
 - ⑤ 총무 6000 자체계획 제7장 전시 예비군운영 계획(과학기술부지침)

부칙

이 변경 내규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이 변경 내규는 2019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2. 상기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사항을 준용한다.
 - ① 예비군동원 9-4 운용 지침
 - ② 예비군동원 9-11 통신지원 지침
 - ③ 예비군동원 9-12 전투근무지원 지침
 - ④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장 직장통합 방위협의회 운용
 - ⑤ 총무 3200 상지대학교시행계획 제7장 전시에비군 운영계획(교육부지침)